경제혁신 3개년 계획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
경 제 혁 신

2015년 4월 13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통신 · 방송 · 인터넷은 4월 12일(일) 06:00 이후 보도 가능
www.smba.go.kr

보 도 자 료

성장 징검다리 중소기업청
Small &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

• 문의: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김봉덕 과장, 류선미 사무관(042-481-4459), 성홍석 주무관(4400)
대·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형준호 부장, 김민석 대리(02-368-8787)

내 기술보호 역량은 몇 점?

- 전문가 기업현장 방문, 기술보호 수준 무료 진단·자문 -

□ 중소기업청(청장 한정화)과 대·중소기업협력재단(이사장 안충영)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무료로 진단하고 원할 경우 보안교육까지 제공하는 **'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무료진단 서비스'**를 실시한다.

○ 보안진단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기업의 전반적인 기술보호 수준을 진단하고 보안 취약점 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다.

○ 진단 결과 심각한 보안상 문제가 발견되거나 기술유출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은 보안솔루션 도입 등 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심화컨설팅*을 추가로 신청·지원받을 수 있다.

* 심화컨설팅 : 총 비용의 65% 지원(35% 신청기업 부담)

□ 기술보호 역량 진단서비스는 **중소기업의 기술보안 역량이 대기업의 66.1% 수준으로 여전히 취약***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, 중소기업이 전문가로부터 기술보호 수준을 진단받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* 대기업(100) 대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: ('12) 56.0 → ('13) 66.1
('2013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조사,' 중기청)

○ 기술이 일단 유출되면 피해 복구가 쉽지 않은 만큼, 중요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기술보호 수준 진단을 통해 취약점을 보완하여 기술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.

□ 중소기업청은 기술보호 역량 진단에 그치지 않고, **진단 결과를 토대로 기업에게 적합한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연계**할 계획이다.

○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이 기술 유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, 기술보호 애로 상담, 기술자료 임치,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, 기술지킴(보안관제) 서비스 등을 지원 중이다.

○ 또한, 기술유출 분쟁에 휘말린 중소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, 올해 1월부터 '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·중재위원회'를 설치·운영하고 있다.

□ 중소기업청은 기술보호 역량 진단 외에도 기술침해 여부에 대한 법률 상담도 지원하며, **올 연말까지 1,200개사를 대상으로 기술보호 진단 및 자문을 지원**할 예정이다.

○ 이를 위해, 보안 진단, 보안 기술, 법률 상담 등 분야별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, 자문결과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통해 진단 수준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.

○ 기술보호 역량 진단은 '**기술보호 통합포털**'(울타리, www.ultari.go.kr)**을 통해 신청**할 수 있으며, 세부 내용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**대·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센터**(02-368-8787)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.

<붙임 1>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개요
<붙임 2> '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·중재위원회' 개요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류선미 사무관(☎ 042-481-445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<붙임 1>

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

1. 기술보호 상담

○ **(개요)**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한 분야별(보안, 법률, 신고·수사 등) 전문상담 지원

○ **(지원내용)** 전문상담 자문수당 지원(11일 이내, 보안교육 1일 포함)

2. 기술자료 임치

○ **(개요)**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 및 협력기업간 안정적인 기술사용 보장 등을 위해 기술자료를 임치센터(대·중소협력재단)에 등록·보관

○ **(임치대상)** 특허권·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, 제조·생산 방법과 판매방법 등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·경영상 정보

3. 기술지킴(보안관제) 서비스

○ **(개요)** 내부직원에 의한 핵심기술 유출 방지 및 사이버 침해사고 방지·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 구축·운영

○ **(지원내용)** ①기술보호 수준 및 보안 취약점 파악 등을 위한 사전점검, ②네트워크, 시스템 장애 등에 대한 24시간×365일 실시간 모니터링, ③침해사고 발생시 원인 분석 및 대응 보안솔루션 지원 등

4.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

○ **(개요)** 중소기업의 보안인프라에 대한 정밀진단 및 설계를 통해 기업환경에 적합한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

○ **(지원내용)** 네트워크, 서버 및 PC보안, 문서보안 등 기술적 대응 솔루션과 출입관리 등 물리적 대응 솔루션 구축

○ **(지원조건)** 총 비용의 50% 한도 (4천만원 이내)

<붙임 2>

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·중재위원회

□ 위원회 개요

○ (설치근거) 「중소기업기술보호법」 제23조 제1항

> **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3조(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·중재위원회의 설치)**
> ①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·중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·중재위원회를 둔다.

○ (설치일) '15. 1. 22

○ (구성현황) 총 37명(직능위원 22명, 기술위원 15명)

구분	판사	변호사	변리사	법학 교수	기술 거래사	유관 단체	-	계
직능위원	3	7	3	2	2	5	-	22
구분	기계 소재	전기 전자	정보 통신	화학	바이오·의료	에너지·자원	지식 서비스	계
기술위원	3	3	3	2	1	2	1	15

* 위원장(호선) : 이창구 법무법인 남산 고문변호사

□ 주요 기능

○ 중소기업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

* 피해기업의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이 있을시, 3명 이상 5명 이하 위원회 위원으로 해당사건을 담당할 조정부 또는 중재부 구성

- 조정 : 분쟁 당사자간 합의 유도 (재판상 화해의 효력)

- 중재 : 분쟁에 대한 중재판정 (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)

○ 그 외 중소기업기술 분쟁에 대한 법률 자문

□ 기대 효과

○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 의한 비공개 조정·중재를 통해 신속·원만한 타협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소송비용 부담을 경감